

[직무발명보상] 사용자가 직무발명 적용 제품을 생산,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발명자의 실시보상금액 산정기준: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4. 6. 선고 2015가합548238 판결



(1) 발명자의 사용자 회사 재직 시 지위 – 해당 사업부 사장, 법원 – 직무발명 인정
+ 사용자에게 대한 직무발명보상청구권 인정

(2) 사용자 회사 – 직무발명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, 판매하는 매출발생

(3) 실시보상 관련 직무발명보상금 = 사용자가 얻을 이익(실시제품의 매출액 x 독점권 기여율 x 가상 실시료율) x 발명자 보상율(발명자 공헌도) x 공동발명자 기여율

(4) 사용자가 얻은 이익 = 실시제품의 매출액 x 독점권 기여율 x 가상 실시료율

(5) 독점권 기여율 – 사용자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넘어서는 독점적, 배타적 지위에
서 추가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직무발명보상 의무 있음

(6) 통상 독점권 기여율 결정에 관한 정량적 근거 제시 판결 사례 없음, 법원은 관련
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단함. 구체적 근거를 밝히는 경우 많지 않음. 본
사안의 경우 아래와 같이 **30%**라고 판단함

나) 독점권 기여율

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, 피고는 이 사건 각 특허를 이용하여 난방기기
제품을 제조·판매하기 이전에는 난방기기 제품을 판매하지 아니하였고, 이 사건 각
특허가 등록된 이후 매출이 상당히 증가하였는바, 이 사건 각 특허가 피고의 난방기기
제품의 매출에 기여한 정도가 상당하다고 보이므로, 피고의 매출액 중 무상의 통상실
시권을 넘어 이 사건 각 특허의 독점적 효력에 기하여 발생한 독점권 기여율을 30%로
본다.

(7) 가상의 실시료 결정 근거로는 다른 라이선스 사례가 있다면 유력한 근거로 작용,
실제 라이선스 사례가 없다면 업계 평균 실시료율 등 참고자료를 근거로 결정하
는 실무 경향,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판부 결단, 본 사안의 경우 특허
청 직무발명 해설집에 포함된 산업부분별 평균 실시료율 자료를 참고하여 **5.1%**

로 인정함

다) 가상 실시료율

살피건대, 기계/도구 산업분야의 실시료율 평균값이 5.1%이므로,³⁾ 이 사건 각 특허에 관한 가상 실시료율도 5.1%로 본다.

각주 3 - 특허청 발간 "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해설 및 편람", 127면

첨부: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4. 6. 선고 2015가합548238 판결

이공계 변호사/변리사, 발명자 중심 보상청구소송, 다년간 업무경험, 소송비용경감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